

2022년도 제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5. 11.(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7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

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380건(안건번호 제2022-34446호~3552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34446호(순번 1번)는 블로그에서 방송의 일부를 이용 중인 사안으로 방송의 출연자인 게시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인 바,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37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701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2-14502호~15202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6개에 접속할 수 있는 70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7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4쪽 내지 5쪽의 OSP명, 게시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OSP명, 게시물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9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38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요청한 건임. 블로그를 통하여 방송 영상물의 한 회 전체 분량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사안으로, 총 1개 게시물이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 해당 블로그의 제목 및 다른 게시물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시자는 해당 방송의 출연자로서, 본인과 본인 가족의 출연분을 게시하고 있음.

게시자는 해당 방송의 출연자로서 권리와 방송 출연 계약 당시 자신의 출연분 이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만일 이용허락이 있었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음. 만약 권리자의 허락이 없는 이용이라 하여

도,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해당성 및 시정권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방송의 전체 분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게시자 본인이 출연한 부분임. 저작물을 오로지 공중의 감상에 제공할 목적보다는 자신의 방송 출연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불법복제물 전송 사안과 동일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합법 시장을 위축시켜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임.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우리 심의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본인이 출연한 영상물을 복제·전송한 게시물에 대하여 권리자의 이용허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한 바 있음.
- C 위원: 앞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

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의견임.

- A, B,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2번~107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379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abcdefu'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8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을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저작물은 2021. 08. 13.에 발매한 POP 장르 곡으로,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유료로 이용 가능함.

(영화 '언차티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23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저작물을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2. 02. 16.에 개봉한 미국 액션 영화로, 시리즈온, wavve 등에서 유료로 이용 가능함.

(방송 '스타트렉: 피카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69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스타트렉: 피카드'를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0. 01. 22. ~ 2020. 03. 26. 방영한 미국 드라마로, 현재

국내 정식 출시 전임.

(만화 '골든 카무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25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저작물을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14년 연재를 시작한 일본 만화로, 웹툰 플랫폼에서 유료로 이용 가능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순번 2번~1076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107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34446호(순번 1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34447호~35521호(순번 2번~107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

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9쪽부터 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4502호~15202호(순번 1번~701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5. 18.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